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11. 29 선고 2024가단1389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1.

판결 선고2024. 11. 29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7. 18.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. 7. 19. 접수 제924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유석동

별지